

2026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

구 분	선 발 기 준														
선발대상	○ (대 상)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*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* 선원가족의 범위: 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 선원이 손자·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(단, 부모가 없을 경우) ○ (승무경력)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														
소득기준	<table><tr><th colspan="4">구 분</th></tr><tr><td colspan="4">2025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(「한국선원통계연보」 기준)</td></tr></table> ※ 단,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% 가산 적용				구 분				2025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(「한국선원통계연보」 기준)						
구 분															
2025년도 선원월평균임금 이하 (「한국선원통계연보」 기준)															
신청기간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접 수</th><th>선발시기</th><th>선발횟수</th></tr><tr><td>기 간</td><td>9월 1일 ~ 10월 23일</td><td>11월 中</td><td>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</td></tr></table>				구 분	접 수	선발시기	선발횟수	기 간	9월 1일 ~ 10월 23일	11월 中	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			
구 분	접 수	선발시기	선발횟수												
기 간	9월 1일 ~ 10월 23일	11월 中	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												
선발인원 및 금액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지급금액</th><th>선발인원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고등학생</td><td>120만원</td><td>00명</td><td rowspan="2">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 조정될 수 있음</td></tr><tr><td>대 학 생</td><td>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</td><td>00명</td></tr></table>				구 분	지급금액	선발인원	비 고	고등학생	120만원	00명	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 조정될 수 있음	대 학 생	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	00명
구 분	지급금액	선발인원	비 고												
고등학생	120만원	00명	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 조정될 수 있음												
대 학 생	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	00명													
선발유형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유 형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고등학생</td><td>① 유상교육대상자: 성적무관</td></tr><tr><td>② 무상교육대상자: 직전학기 성적 교내 상위 10%</td></tr><tr><td>대 학 생</td><td>직전학기 성적 평균 2.0이상</td></tr></table>				구 분	유 형	고등학생	① 유상교육대상자: 성적무관	② 무상교육대상자: 직전학기 성적 교내 상위 10%	대 학 생	직전학기 성적 평균 2.0이상				
구 분	유 형														
고등학생	① 유상교육대상자: 성적무관														
	② 무상교육대상자: 직전학기 성적 교내 상위 10%														
대 학 생	직전학기 성적 평균 2.0이상														
선발제외 대 상	○ 학비(수업료)를 면제 받는 경우 ○ 고등학생 :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○ 대 학 생 :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○ 선원법(제3조) 적용 제외 선박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② 호수, 강 또는 항내(港內)만을 항행하는 선박(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)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④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(桴船)(다만,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) ○ 선박소유자 ○ 관공선 선원 ※ 단,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(용역)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														
유의사항	○ 신청시 이증지원으로 인한 불이익(장학금 반환)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

구 분	선 발 기 준
제출서류	○ 소정양식(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(학생용) ② 장학생선발신청서(사업장확인용)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○ 월평균급여증명서류 : 1부 - 20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 필 ※ 순직·장해선원,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○ 승무경력증명서(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) : 1부 - 연근해어선 부원 :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(해양경찰서 발급) ※ 순직·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·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○ 가족관계증명서 : 1부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 ※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○ 재학증명서 : 1부(2026년도 9월 이후 발급분) - 원본제출 ○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: 1부(2026년도 2학기 발급분) ○ 성적증명서 : 1부(직전학기 성적 / 대학생만 해당) - 원본제출 ○ 기타서류(해당자에 한함) - 순직사실확인서류(순직선원만 해당) - 장해등급증명서류(장해선원만 해당) - 기타: 기초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 ※ 재학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제출(PDF로 발급된 문서를 출력 시 사본)
선발순위	○ 제1순위 : 순직선원 유가족 ○ 제2순위 : 장해선원 가족 ○ 제3순위 :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○ 제4순위 :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○ 제5순위 :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 ○ 제6순위 : 한부모가정 선원가족 ○ 제7순위 : 신규 신청 선원가족 ○ 제8순위 :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 ○ 제9순위 : 그 밖의 선원가족 ※ 동일순위인 경우 월평균급여↓, 선발횟수↓, 승선경력↑, 고학년 순으로 선발
접수방법	○ 방문 및 우편 접수 (전화: 051-996-3636, 팩스: 051-463-8124) -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66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)